

대법원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6. 19. 서삼석[前 무안군수, 6·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소속)]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구 정치자금법¹⁾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0724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²⁾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서삼석은 前 무안군수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내 무안·신안 지역구 경선에서 패배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안·신안·영암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임³⁾
- 피고인 서삼석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를 하고(① 내지 ⑤ 부분),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⑥ 부분)한 혐의로 공소 제기 됨
 - ① 2014. 12. 23.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피고인 서삼석을 고문으로 하는 ‘미래를 위한 무안포럼’ (이하 ‘미래포럼’ 이라고 함)을 설치하고, 2015. 3. 14.부터 2015. 8. 22.까지 미래포럼 산악회

1) 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이하, 이 사건 12명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서삼석에 대한 부분만 정리함.

3) 2018. 6. 13.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

활동을 통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을 함

- ② 2015. 9. 21.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를 통해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함과 아울러 사전선거운동을 함
- ③ 2015. 6. 2. 이윤석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 전봇대 이설 과정에 현역 국회의원의 갑질과 외압이 있었음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함
- ④ 2015. 10. 6.부터 2015. 11. 28.까지 총 17회에 걸쳐 신안군 내 17개의 행사장을 방문하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함
- ⑤ ‘주간노령’ 신문의 편집인 겸 대표인 피고인 이민행과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이윤석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6. 8.부터 2016. 1. 1.까지 주간노령 신문 및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윤석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4건의 기사를 발행·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함
- ⑥ 2015. 9. 21. 미래포럼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2015. 8. 13.부터 2015. 9. 21.까지 피고인 강기삼 등 미래포럼 임원, 비회원 등으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아 정치자금을 기부받음

■ 소송 경과

- 제1심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 원심 : 제1심판결 중 ⑥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만 파기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 원 및 추징 700만 원을 선고함
- ⑥부분의 유죄이유 : 미래포럼은 정치인 피고인 서삼석이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이고, 미래포럼 주최 2015. 9. 21.자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피고인 서삼석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 목적의 정치활동이므로,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입금된 돈은 이를 피고인 서삼석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

이 타당함

- 그 외 나머지 무죄 판단 근거는 제1심과 같음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 제기

-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상고 제기

-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그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구체
적인 상고이유를 주장하며 다툼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주요 쟁점

● 공직선거법 관련

- 미래포럼이 공직선거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사조직(제87조 제2항)에 해당
하는지 여부, 미래포럼 산악회 행사, 미래포럼 주최 2015. 9. 21.자 정책세
미나 활동이 단체 명의 선거운동 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치자금법 관련

- 미래포럼 주최 2015. 9. 21.자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계
좌를 통해 돈을 받은 것이 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
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의 결과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피고인
서삼석에 대하여 벌금 90만 원, 추징 700만 원 확정)

-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에 제한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해당
하지 않음

■ 판단의 근거

●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원심의 근거와 동일함

●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 원심의 근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서삼석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고,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형식만을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미래포럼 회원들 중 극히 소수 위원들만이 2015. 9. 21.자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미래포럼 회비 계좌의 다른 회비와 혼합되지 않고 모두 위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임
- 미래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서삼석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음

3. 판결의 의의

- ▣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같은 조 제3항의 추징의 요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개념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요 쟁점들에 관하여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등에서 판시한 기존 법리(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를 재확인함